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각 소관 실·국별로 각각 운용중인 다양한 계층의 인권 및 권익증진 논의를 위해 지난 1년간(2023.9.15.~2024.9.14.)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함

I 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 「지방자치법」제 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각 소관 실·국별로 각각 운용 중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 구성경위

-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됨.
- 구성결의안 처리 경과
 - ▶ 2023년 9월 14일 서호연 의원 외 13명 제안
 - ▶ 2023년 9월 14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 2023년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 및 위원 선임으로 활동 개시

■ 위원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지역구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1	위원장 (국민의힘)	 서 호 연	구로3	행정자치	
2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 혜 영	광진4	문화체육관광	
3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민 옥	성동3	기획경제	2024. 4. 19. 사임
4	위 원 (국민의힘)	 곽 향 기	동작3	교통	
5	위 원 (국민의힘)	 박 상 혁	서초1	교육	
6	위 원 (국민의힘)	 윤 영 희	비례	교통	
7	위 원 (국민의힘)	 이 상 옥	비례	도시계획균형	
8	위 원 (국민의힘)	 이 중 배	비례	문화체육관광	
9	위 원 (국민의힘)	 이 희 원	동작4	교육	
10	위 원 (국민의힘)	 정 지 응	서대문1	교육	
11	위 원 (국민의힘)	 황 철 규	성동4	교육	
12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경	강서1	문화체육관광	2024. 4. 19. 사임
13	위 원 (더불어민주당)	 임 종 국	종로2	도시계획균형	2024. 4. 19. 사임
14	위 원 (더불어민주당)	 박 강 산	비례	행정자치	2024. 4. 19. 사임

II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 활동내역

●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3. 10. 11.(수) 13: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위원장	서호연	행정자치	구로3	국민의힘	
부위원장	김혜영	교육	광진4	국민의힘	

- 회의 사진



<제1차회의> 2023. 10. 11. 13:00

●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3. 10. 26.(목) 10: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인권 관련 추진사항 업무보고

-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소관)**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및 이를 통한 사업(인권교육 활성화·학교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학생인권기구 운영·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 등) 추진,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안.
-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교원의 노동인권 교육 역량 강화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실태조사, 학습지원 등을 추진 중.
- **(서울시평생교육국소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대상별 인권교육 등과 인권 인식 확대를 위한 인권 페스티벌을 지원
-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파악, 인권보장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2년에 한번 시행하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음.
- **(서울시인권담당관소관)**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통해 시정에 반영이 필요한 인권정책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등 일반 시민과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등 기본적인 인권 강화 사업 추진.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소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 인권 중 안전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화 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긴급보호, 의료·법률·자립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인권 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들은 이러한 각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서에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음
 - 1) 교육청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내역과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범위 등 세부내역, 교육청에서 추진한 학생인권 권리구제에 관한 세부 내역, 노동인권교육 관련 콘텐츠 세부 내역
 - 2) 여성가족정책실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의 지원 내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지원 내역
 - 3) 감사위원회의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등.
 - 4) 평생교육국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3년치 내역 일체, 인권 관련 민원 사항 등.
- 참석자 : 특별위원회 위원(서호연, 김혜영, 곽향기, 윤영희, 이종배, 정지웅, 황철규), 구자희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박성규 인권담당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 회의 사진



<제2차회의> 2023. 10. 26. 10:00

●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3. 12. 21.(목)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 * 위원 추가 선임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따른 부위원장 추가 선임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위원장	서호연	행정자치	구로3	국민의힘	
부위원장	김혜영	교육	광진4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민옥	기획경제	성동3	더불어민주당	추가 선임

- 회의 사진



<제3차회의> 2023. 12. 21. 11:00

●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4. 4. 26.(금)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및 의결
 - 시민들의 요청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주민 조례청구)에 대한 집행정지 및 소관상임위원회의 지속적인 미상정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폐지안 심의
- 회의 사진



<제4차회의> 2024. 4. 26. 11:00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4. 8. 30.(금)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간담회장
- 내 용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보고

III 위원회 향후계획

■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 2024. 9. 14.

-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 붙임 1. 보도자료 4부.
2.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인권 관련 업무보고 각 1부.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 조례 및 쟁점사항 1부.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023. 9. 18.(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서호연 의원(구로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의원	서호연	
의원연구실	825호	02-2180-8731
정책지원관		02-2180-5842

서호연 시의원 대표발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 인권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월 15일(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인권·권익향상 특위 구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원만한 사전협의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동 결의안은 지난 14일(목) 박환희 운영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결의안 의결에 따라 향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며 서울시민의 인권·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점검과 관련 조례 입법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결의안 통과 직후 서호연 의원은 “인권·권익향상 특위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자,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권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 호 연 의원 (국민의힘, 구로3)

- ▶ 現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 前 5·7·8대 구로구의원

Tel : 02-2180-8731~2

Fax : 02-2180-8735

E-mail : sho3120@hanmail.net

Mobile. : 010-5265-3120

2023. 10. 12.(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의원명 : 서호연 위원장(국민의힘, 구로 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서호연	
의원연구실	825호	2180-873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서호연 위원장 선임”

- 서호연의원 위원장, 김혜영의원 부위원장 선임
-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 증진 위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 인권 제도 정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3)이 선임되었다.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 라고 함)는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폐회중 회의를 개최해, 서호연 위원장(국민의힘, 구로3)과 김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을 각각 선임했다.

※ 인권특위 위원으로는 서호연 위원장·김혜영 부위원장·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 선임

이번 인권특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호연의원 등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제1차 회의에서 인권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호연 의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계층의 인권 증진 대책 마련은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가 나뉘어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소관하는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의원은, “본 특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부위원장으로로서 최선을 다해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 본 인권특위는 향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 의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약자(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노인, 교통약자, 이주민, 비정형노동자, 여성, 교사, 학생 등)와 함께 누리는 도시, 사회에서의 약자 보호, 인권제도 및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인권 관련 조례·정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붙임1】 위원장 약력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 호 연 의원 (국민의힘, 구로3)

▶ 現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前 5·7·8대 구로구의원

Tel : 02-2180-8731~2 Fax : 02-2180-8735
E-mail : sho3120@hanmail.net Mobile. : 010-5265-3120

2023.10.16.(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의원	김혜영	
의원연구실	602호	02)2180-8446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는 제 320회 서울시의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3), 부위원장으로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권특위 위원으로는 서호연 위원장과 김혜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선임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조성된 특별위원회다. 인권특위는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구성되었다.

□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 인권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의원은 “본 특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으로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부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성 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대 서울시의원 ·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 (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간사 · (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2024.4.30.(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의원	김혜영	2180-8446
의원연구실	602호	2180-8447
정책지원관	조지훈	2180-5851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아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

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거나 틈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현기 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집단적 여론을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학교 현장의 폐단을 날날이 폭로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신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성 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대 서울시의원 ·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 (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간사 · (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붙임 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관련 업무보고 각 1부

가. 서울시교육청 소관 인권·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별도첨부)

나. 평생교육국 소관 인권·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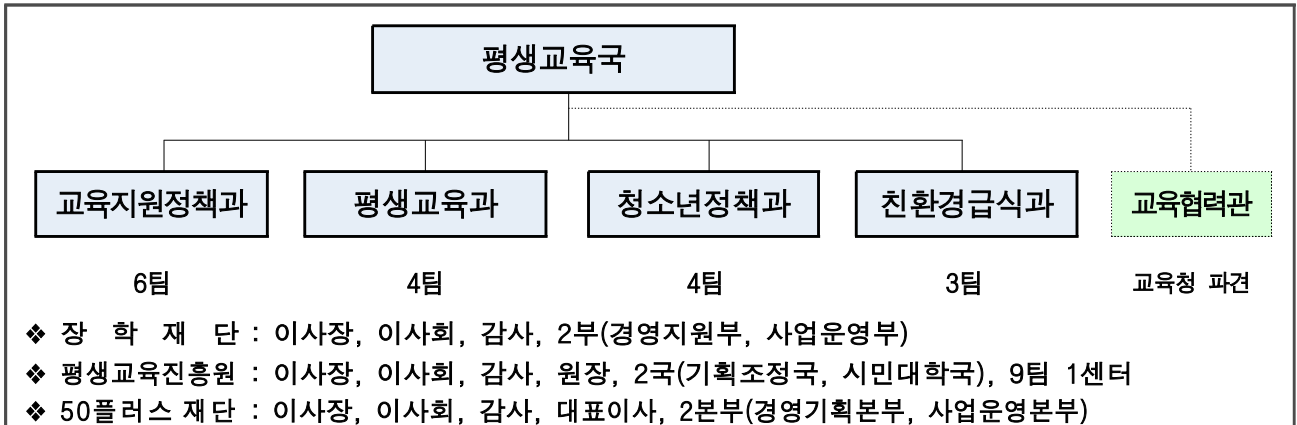
주요업무보고

2023. 10.

평생교육국

I. 일반현황

조직 - 1국 4과 17팀



인력 - 정원 87명 / 현원 84명

(2023. 9.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87/84	1/1	4/4	22/19	29/26	29/31	-/2	2/1
교육지원정책과	29/30	1/1	1/1	7/6	12/11	8/11	-/-	-/-
평 생 교 육 과	19/18	-/-	1/1	6/6	5/4	6/6	-/-	1/1
청 소 년 정 책 과	23/22	-/-	1/1	5/4	9/6	8/9	-/2	-/-
친 환 경 급 식 과	16/14	-/-	1/1	4/3	3/5	7/5	-/-	1/-

* 시간선택제임기제(정원외) : 교육지원정책과 다급 5명, 청소년정책과 라급 1명, 한시임기제 7호 1명

예산 - 4조 8,099억원(일반사업비 4,883억)



[최종 예산]

■ 법정전출금 4조 2,926억
 ■ 조례상전출금 291억
 ■ 일반사업비 4,883억



[일반사업비]

■ 교육지원정책과 824억
 ■ 평생교육과 748억
 ■ 청소년정책과 918억
 ■ 친환경급식과 2,393억

부서별 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교육 지원 정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 서울런 운영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발굴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 학교안전 및 폭력 예방 사업(학교보안관, 스쿨버스 운영) ▶ 서울장학재단 지도·감독
평 생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런 4050 중장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중장년 직업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운영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50플러스재단 및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지도·감독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악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운영 및 자치구 동네배움터 운영 ▶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임차·운영 ▶ 중장년 평생학습(직업교육) 교육 경비지원 추진 ▶ 50+보람일자리 사업 운영,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청 소 년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업무계획 수립·추진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추진 ▶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시정참여 지원 ▶ 청소년축제, 서울시민상(청소년부문) 운영 ▶ 청소년 국제·지역교류 사업, 동아리 운영 등 체험활동 지원 ▶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및 성과평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추진 등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
친 환 경 급 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유치원 포함) ▶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유치원 포함)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운영(식재료 관리 대행사무 포함)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II. 정책목표

비전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목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 사다리를 통해 인생 전환

과제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추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추진
기반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학교간 연계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시-교육청 간
생산적 관계 정립

III. 업무보고 목차

1.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2.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운영(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의회)

3.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페스티벌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24조(참여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사업개요

○ 인권교육

- 추진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사업내용 : 대상별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등
- 사업예산 : 총 178,600천원(시비 100%)

○ 인권페스티벌

- 추진기관 :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인권 페스티벌 진행 및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예산 : 총 10,000천원(시비 100%)

□ 추진실적('23.9.30.기준)

① 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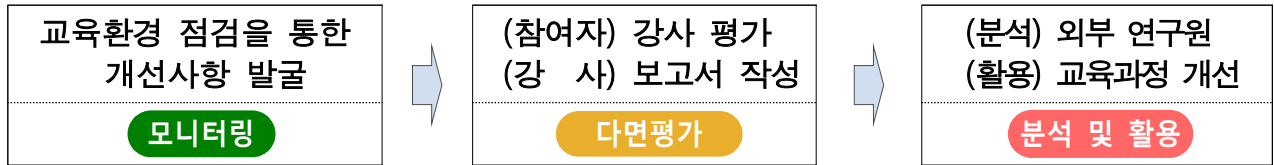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총 162회/180회, 3,720명/4,385명

구 분	진행률	계	어린이·청소년	청소년시설 종사자	아동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횟수(회)	90%	162	86	16	54	6
인원(명)	85%	3,720	1,338	367	1,853	162

○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역량 강화(33명)

- 전문 강사진 구성 : 아동인권옹호 전문강사 6명, 위촉(양성)강사 27명
- 역량 강화 : 강사진 워크숍, 간담회, 재교육(최신 인권이슈 특강, 교육콘텐츠 개발 등)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22년 기준)



- (모니터링) 전체 교육 168회 중, 40회 모니터링 실시(5점 만점 평균 4.67점)
- (참여자) 총 6,181부의 참여자 평가지 제출(5점 만점 평균 4.29점)
- (강사진) 168회 교육별 강사 결과보고서 평가(5점 만점 평균 4.7점)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 조성 컨설팅

- 방문 컨설팅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에 방문하여 현장 중심 제언 및 서울시 시설의 인권친화 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 추진실적 : 동명아동복지센터, 성모자애드림힐 컨설팅 완료

② 인권 페스티벌

- 일 시 : '23. 8. 26.(토) 11:30 ~17:00
- 장 소 :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일대
- 참여기관 : 시립 강동청소년센터 외 11개소(총 15개 부스)
- 참가인원 : 총 2,703명(청소년 2,477명, 성인 226명)
- 행사내용
 - 즐거운 인권 체험 : 인권 체험부스 운영
 - 함께하는 인권 공연 : 개막식 공연 및 퍼포먼스 내 청소년 참가
 - 참여형 인권 이벤트 : QR코드를 활용한 인권 퀴즈, 인권 관련 SNS 공유 이벤트 등

□ 향후계획

- 대상별 인권교육 및 시설별 인권친화 환경 조성 컨설팅 추진 : ~'23.12월

2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운영(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의회)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 도모

□ 추진근거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98년 UN아동권리협약)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청소년의 참여)

□ 사업개요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추진기관 : 서울시 1(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 자치구 23(위탁 17, 직영 6)
- 사업내용 : 서울시 청소년 정책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제안
- 사업예산 : 총 81,200천원(국비 34,400, 시비 46,800)

○ 청소년의회

- 추진기관 :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업내용 : 서울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건의
- 사업예산 : 총 2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구 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구 성	▶ 인원 : 100명 내외(9-24세)	▶ 인원 : 50명 내외(9-24세) ▶ 참여활동 경력이 있는 청소년
기 능	▶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 ▶ 새로운 정책 제안	▶ 정기회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 서울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23년 예산	▶ 서울시 23,000천원(국5,000, 시18,000) ▶ 자치구 58,000천원(국29,000, 시29,000)	▶ 20,000천원

□ 추진실적('23.9.30.기준)

○ 위원 선발 및 구성(임기 '23.4.~'24.3.)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41명) : 4 분과위원회(복지·경제·문화, 안전·환경·교육, 참여, 홍보)
- 청소년의회(21명) : 3 상임위원회(시정모니터링, 온라인정책개발, 홍보및대외협력)

○ 발대식 및 개원식 개최(본관 대회의실)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4.29.), 청소년의회 개원식(4.22.)
- 위촉장 수여 및 전년도 우수위원 표창장 수여, 연간활동 안내, 의장단 선출 등

○ 분과위·임원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월 1회)

-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 탄소중립 중점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등
- 청소년의회 정책 제안 : 서울런 진로 멘토·멘티 플랫폼 개선, 학교 내 성교육 질 개선 등

□ 향후계획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대회) 개최

- 일 시 : 2023. 11. 18.(토) 14:00 ~ 17:00
- 대 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위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일 시 : 2023. 11. 4.(토) 15:30 ~ 17:00
- 내 용 : 온라인 발굴 정책 제안, 시정질의, 자유발언 등
- ※ 선정된 정책 부서별 검토 후 반영

○ 청소년 참여기구(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통합연계 운영

- (필요성) 두 참여기구 역할에 유사성(정책 제안·자문·모니터링 등)이 많아서, 상위법(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연계할 필요
- (추진실적) 참여기구 활동조력자 공동운영(공동 사업설명회, 간담회), 참여기구 합동 교육 및 교류(임원진 연합 워크숍, 연합 캠페인), '24년도 예산 통합 반영
-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청소년의 참여) 제7조 개정

붙임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 내용('22년 실적)
-----------	----------------------------------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위원회	정책명	주요 내용	검토 결과
교육·권리	No 키즈존? YES CARE 키즈존!	- 서울시 내 노키즈존을 케어키즈존으로 전환 - 공공장소 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	일부반영 (추진 중)
문화·복지	청소년증 기능 확대에 관한 정책제안서	-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장소 확대 - 홍보를 통한 인지도 개선	일부반영 (추진 중)
안전·환경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공공자전거 추가 설치 - 공공자전거 관리 강화 - 서울시 공공자전거 보험제도 확대	일부반영
참여	서울시 이동·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투어버스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투어 운영 - 이용자의 코스 설정 - 단체 및 개인 운영	일부반영

○ 청소년의회 정책제안

위원회	정책명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시정 모니터링	단기 청소년쉼터와 의료연계 강화	- 청소년쉼터 인근 1차 병원과의 연계 강화 -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일부반영
정책발굴	시립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생활	- 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립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무 고용 시범적 추진 및 노동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부반영
	서울시 초등학교 내 계단 단 높이 규정 개정	- 초등학교 내 계단 이용 시 사고 방지를 위해 계단 단 높이 규정 재검토 및 필요시 단 높이 규정 개정 추진	일부반영
	교실 내 책상 앞가리개 설치 의무화	- 청소년들의 인권 및 학업능률 향상을 위해 교실 내 책상 앞가리개 설치 의무화 추진	미 반영

3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사항 파악과 인권보장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격년 실시

□ 추진방향

- 인권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자료 및 근거 마련
- 표본설계 및 분석 시 자치구별 비교
 - ※ '22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자문 내용을 근거로 조사 방향 반영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나인스텝 컨설팅
- 조사방법 :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 조사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어린이·청소년 생존·보호·발달·참여권에 대한 실태 조사
 -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욕구 파악 등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맞는 표본지표 및 문항개발(청소년인권위 자문)
 - 학교 외 교육 기관 및 청소년기관 등 인권실태 문항
 - 원격수업과 학교 현장 수업에 따른 인권교육 차이 및 환경 실태 파악
 - 어린이 항시 보호 항목 등 수정 보완 등
- 사업예산 : 50,000천원

□ 향후 계획

- '23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중간 보고 : ~'23.11월
- '23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실시 완료 : ~'23.12월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인권·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2023.10.26.(목) 10:00
운영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2023. 10.

감사위원회

I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23.9.30. 기준)

구 분	계	행 정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 원	20	16	1	3	5	7	-	-	4	3	1
현 원	16	12	1	3	3	5	-	-	4	3	1
과부족	△4	△4	-	-	△2	△2	-	-	-	-	-

기 능

인 권 정 책 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및 인권정책 홍보
-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등 추진

인 권 보 호 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인권실태조사 추진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 권 협 력 팀

- 인권교육 운영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2023년도 예산

세입 예산 : 6,917천원

(’23.9.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	전년 대비 증 감	%	비고
계	6,917	2,992	76.2%	
경상적세외수입	60	15	33.3%	
기타이자수입	60	15	33.3%	보조금 이자 반납
임시적세외수입	6,857	2,977	76.7%	
보조금반환수입	6,857	2,977	76.7%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세출 예산 : 624,850천원 ※ (’22년) 1,178,314천원

(’23.9.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계	624,850	341,751	283,099	54.7%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34,578	27,962	55.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15,900	20,920	43.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39,310	32,190	55.0%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0	36,050	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48,600	106,200	31.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27,814	14,186	66.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6,476	524	99.6%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0	10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21,808	30,192	41.9%
기본경비	37,140	22,265	14,875	59.9%

※ 각종 용역 진행 중(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으로 용역 만료 후 집행 예정(11~12월)

소관 조례 및 위원회

□ 자치법규(조례 2, 규칙 1)

(’23.9.30. 기준)

연번	구분	자치법규명	제정 일자	최근 개정 일자
1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012-09-28	2022-12-30
2	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2013-01-10	2023-04-13
3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2015-01-02	2021-07-20

□ 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자문, 정책개선 권고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자문
 -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 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市 자치법규,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등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호선)
- 회의 : 연 4회 및 필요 시 수시 개최

②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기능)
- 임기 : 3년(연임 불가)
- 주요기능 : 인권침해사항 의결 및 시정 권고
- 구성 : 9명 이내(위원장 호선)
- 회의 : 월 1회 정기회, 임시회(수시)

II

주요 추진사업

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인권도시 서울」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지속 조성

□ 추진계획

- 시정에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 비(非)인권적 정책 등 개선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지킴이단 추진
- 인권적 행정지원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市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 추진실적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 및 시행계획 수립(3~5월)
 - －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를 위한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
 - － 시민공청회(1회), 市 인권위원회 심의자문(2회), 전문가 자문(6회) 등 이행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3회), 신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활동 전개
 -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10건)
 -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선발(26명) 및 현장방문(9회)
- 인권영향평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추진
 - － 분야별(안전, 보건)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추진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7~9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4차) 개최 : 12월
- 인권지킴이단 활동 : 10월
 - － 노인 양로·요양시설 내 비인권적 요소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1회)

작성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 2133-6370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 6385 담당: 유춘상 ☎ 6387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가치 확산에 기여

□ 추진계획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례적 운영
-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추진실적

- 2023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3.10.16.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비고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권고	기각·각하 등	조사중	
249	22	227	30	5	22	3	전년도 이월사건(8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9회(정기회 7회/임시회 2회)
 -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 : 총 26건(권고 5건, 기각·각하 등 21건)
-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1회(주제 : 市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시 원격대학 학생 차별)
-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 실태조사 5건 추진 중
 - 인권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관(부서)에 정책개선 권고 등 시행 예정

□ 향후계획

- 2022 결정례집 제작 배포 추진 : 10월
 -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전파를 위한 2022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배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3회) 및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1회) : ~ 12월
 - 인권침해사건 심의·의결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2023년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위원회 자문·권고 : ~ 12월

작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 2133-6370 인권보호팀장: 김종오 ☎ 6377 담당: 김지영 ☎ 6379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市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시민 대상 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으로 인권문화 조성

□ 추진계획

- 市 본청·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 인권 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가치 확산

□ 추진실적

-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집합교육(17회, 990명 이수)
 - e-인권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20개 과정) 실시 중
 - ‘정보와 인권’ 주제 웹드라마 등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 (총 3편)
- 공개모집을 통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학생 등 공개모집을 통한 대면 및 온라인 탐방 병행 운영
 - ※ 대면탐방(7개 코스, 40회, 715명), 온라인탐방(5개 코스, 7회 175명)

□ 향후계획

- 인권교육 실시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 ~ 12월
 - 직원 대상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및 교육 이수율 관리
 -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완료 및 등재 (인재개발원·평생학습포털)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탐방코스 개발 검토 : ~ 12월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02-2133-63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정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9. 12. 31.>

④ 삭제 <2022.12.30>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5. 14.>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9., 2020. 10. 5.>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2의2. 삭제 <2021.9.30>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 9. 29.>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9.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9. 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 9. 29., 2019. 3. 28.>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2016. 9. 29.>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9. 29., 2022.12.30>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12.30>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삭제 <2022.12.30>
- ④ 삭제 <2022.12.30>
- ⑤ 삭제 <2022.12.30>
- ⑥ 삭제 <2022.12.30>
- ⑦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3(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의5(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2022.12.30>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신설 2022.12.30>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2.12.30>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16. 9. 29, 2022.12.30>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④ 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8., 2022.12.30>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의2(조사수행)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1조(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 위원 및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

1.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 9. 29.]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 삭제 <2022.12.30>

제23조 삭제 <2022.12.30>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5조 삭제 <2022.12.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9.>]

부칙 <제858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인권·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동행·매력
특별서울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2023.10.26(목) 10:00
운영위원회 회의실

SE♥UL M!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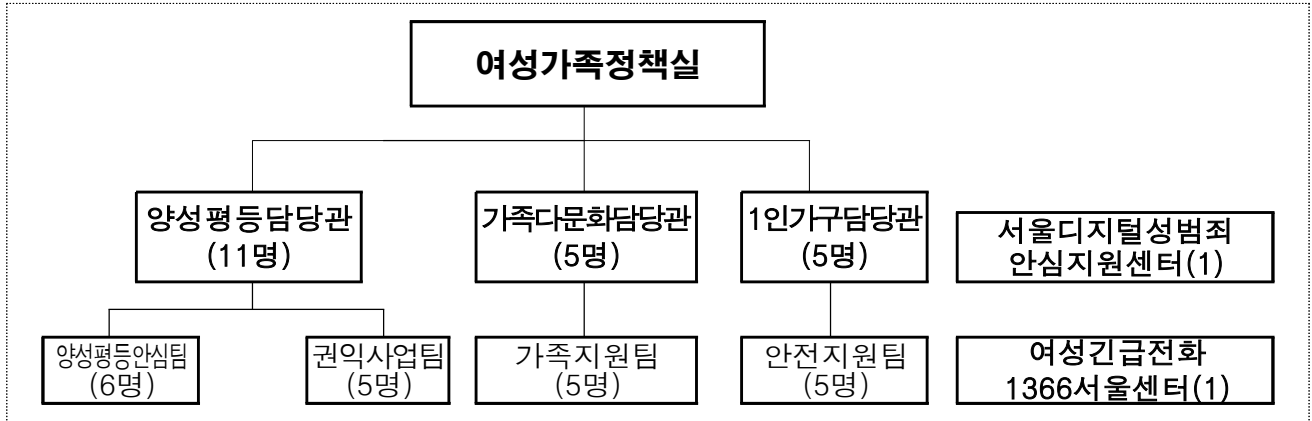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23. 10.

여성가족정책실

I. 여성인권 관련 대응조직 현황

□ 여성 인권 대응 조직체계 : 3담당관, 4팀 21명, 2개 센터 33명



□ 기관별 주요역할

※ 23년 총예산 : 37,070백만원

유 관 조 직	주 요 업 무	'23년 예산
양성평등담당관		14,717백만원
양 성 평 등 안 심 팀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	2,345백만원
권 익 사 업 팀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구조지원	12,372백만원
가족다문화담당관		11,581백만원
가 족 지 원 팀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1,581백만원
1인가구담당관		7,987백만원
안 전 지 원 팀	○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 안심장비 지원사업,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앱' 운영	7,987백만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삭제·법률·심리 지원	1,444백만원
여 성 긴 급 전 화 1 3 6 6 서울센터	○ 가정폭력 피해자 등 24시간 긴급 상담 및 시설연계	1,341백만원

II. 주요업무 보고

1. 이상동기범죄 대응 위한 여성안전대책 강화

2.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3.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운영

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이상동기범죄 대응 여성안전대책 강화

1인가구담당관 : 이동섭 ☎2133-9259 안전지원팀장 : 조은재 ☎6160 담당 : 옥혜경 ☎6162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신속히 보강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①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운영기간 : '23. 4 ~ 12월(9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16개소
- 배치인원 : 67명(구역별 4명 등) ※ '23.9월 신림동 1개소 4명 추가배치
- 사업내용 : 도보순찰을 통해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 대응
- 소요예산('23년) : 1,814백만원

② 안심귀가스카우트

- 운영기간 : '23. 1 ~ 12월(12개월)
- 대상지역 : 25개 전 자치구
- 배치인원 : 370명(자치구별 배치인력 상이) ※ 8개구 36명 추가배치('23.10.~12.)
- 사업내용 : 심야시간 지하철역 등 거점에서 목적지까지 귀가동행
- 소요예산('23년) : 3,807백만원 ※ 성평등기금 110백만원 별도 추가편성

③ 안심이앱

- 사업내용 : 안심이앱으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연계 안심귀가지원
- 주요서비스 : ① 긴급신고, ② 귀가모니터링, ③ 안심귀가택시,
④ 안심귀가 예약, ⑤ 안심시설물 정보
- 소요예산('23년) : 1,866백만원

④ 안심장비 지원

- 사업내용 :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심장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가구)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심홈세트 설치·지원
 - (여성1인점포) 경찰출동이 가능한 안심이 관제시스템 연계 비상벨 설치·지원
 - (스토킹범죄피해자) 기존 스마트초인종 및 가정용CCTV 외에 음성인식 비상벨, 디지털 도어록 추가 지원
- 소요예산('23년) : 500백만원

□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 안심마을보안관 1개소(관악구 신림동) 추가 선정(15개소→16개소)
- 안심귀가스카우트 관악구 등 8개구 36명 추가 배치(334→370명) 운영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실시, 배치인원 확정 ※ 운영기간 :10~12월

(단위: 명)

구분	소계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은평	금천	관악	강남
추가배치인원	36	6	6	2	2	2	4	10	4

- 안심이앱 효과음 다양화 및 간편 가입기능 추가 등 긴급신고 기능 강화(9월)
 - (기존) 2가지 효과음 제공(사이렌,진동) → (개선) 2가지 효과음+경찰출동 지원예정 음성 추가
 - 이용자 사용편의를 위한 가입절차(카카오) 간소화

□ 향후계획

- 안심이앱 및 안심이총괄센터 기능개선 : ~'23.12.
 - 안심이앱 내 서울전역 방범비상벨 위치제공 및 안심이총괄센터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상황 실시간 영상확인
-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운영 및 운영기간(9→10개월) 확대 : '24.~
- 안심귀가스카우트 100% 사전예약제 실시 : '24.~
- 안심이앱 기능3종(안심경로·안심친구·안심영상) 추가 및 안심장비 지원 확대 : '24.~
 - ※ 안심경로(CCTV등 설치된 보행경로), 안심친구(보호자가 사용자위치 실시간확인), 안심영상(스마트폰 카메라영상을 총괄센터로 전송)
- 안심이앱 신규회원 가입자수 제고를 위한 확대방안 추진 : '24.~

2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오부자 ☎5028 담당: 김지현 ☎50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지원, 심리·치유까지 원스톱 지원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9.7 제정)
- 운영방식 : 공기관 위탁(서울여성가족재단 / '22.3.29일 개관)
- 구 성 : 3팀 11명(삭제지원팀, 피해지원팀, 예방대응팀)
- 사업내용 : 전화 한 통화로 일상회복까지 원스톱지원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 (☎815-0382)	+	삭제 지원 • AI딥러닝 삭제기술 활용,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	법률 지원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소송 지원	+	심리 지원 • 전문 심리치료사 연계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제공
---	---	---	---	--------------------------------------	---	--

- 소요예산('23년) : 1,444백만원

□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 전국 최초, AI 딥러닝 삭제기술 활용으로 검색 속도 및 정확성 고도화
 - AI 기반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분석 통한 정밀도 100%, 정확도 95% 탐지
 - 육안 판독 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검출속도 3분 내외로 단축, 정확도 200%↑

- 안심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을 통해 총 12,734건 지원

- 수사법률지원 3,816건, 삭제지원 3,512건, 심리치료 1,180건
초기 상담 및 사례관리 4,019건 등 12,734건 지원

※ '22년 피해지원('22.3~12월) 총 6,241건 대비 204% 증가



□ 향후계획

- 서울경찰청 협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계 : '23.10.~
- 서울기술원 협업, AI 딥러닝 삭제기술 고도화 운영 : '23.10.~

3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운영

양성평등담당관: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오부자☎5028 담당: 양경은, 김지현, 이소민☎5032

최근 스톱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피해자 일상회복까지 통합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7.18. 시행) 「서울특별시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 도모
- 소요예산('23년) : 562백만원

□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① 전국 최초, 市-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공동협약(MOU)' 체결('23.9.13)

-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톱킹 피해 원스톱 지원 협약
-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및 사례관리
- 고위험군 스톱킹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공동 운영



공동협력 협약(MOU) 체결

② 전국 최초, 市-서울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공동 운영('23.3~)

- 스톱킹 신고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파견한 전문인력이 심사회의에 참여
- 총 31개 경찰서 117회, 1,112건 운영으로 피해자 적시 발굴 및 연계

③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23.10~)

- 스톱킹 피해자 대상 법률·심리·의료·경제지원 등 원스톱 지원

심리정서 • 심리치료 지원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변호사 선임비 • 민사, 형사지원	+	보호주거지원 • 이주비용 지원 • 보호시설 지원	+	경제지원 • 긴급 생계비 • 피해 구조금	+	기타지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열람제한
------------------------------------	---	--	---	---	---	-------------------------------------	---	----------------------------------

④ 고위험 스톱킹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23.10.~)

- 서울시-서울경찰-민간경호업체(9.25일 선정)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등 운영 : '23.10.~

※ 지원 실적(10.4.~10.18.) : 총37건(심라상담 24, 법률지원 3, 이주비 지원 4, 의료 지원 1, 민간 경호 5)

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양성평등담당관 : 이성은 ☎2133-5005 권익사업팀장 : 원미혜 ☎5052 담당 : 심효진 ☎5055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수행기관

사업명	운영기관	위치	협약기간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사업	십대여성인권센터	영등포구 당산동	'21.2.3. ~ '24.2.2.
장애 특성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사)평화의샘	동작구 상도동	(3년)

- 사업내용 : 성착취 피해 예방에서 긴급구조, 의료·법률, 사후관리까지 지원
 - (예방·조기개입)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 지원, 긴급구조
 - (지원·사례관리) 의료·법률 및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 사후관리
- 소요예산('23년) : 511백만원(국비 24.6%, 시비 75.4%)

□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 '23. 5월~
 - (대상확대) 성매매 피해 ⇒ 성착취 피해 및 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 원스톱 지원
 - (지원확대) 심리·의료지원(80만원⇒100만원), 다양한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신규 지원
- 운영실적 : 116명, 2,261건

계	상담지원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학업·지립 지원	기관연계
2,261건	1,204건	916건	123건	6건	12건

□ 향후계획

- 온라인 성매매 광고 등 신속 차단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 : '24.~
 - (기존)시민감시단 육안 모니터링·신고 → (개선)AI활용 신속대량 검출·신고
- 온라인 기업·시민 참여 캠페인, 교사 등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추진 : '24.~

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족다문화담당관:천주환☎2133-8680가족지원팀장:최정열☎8690담당:박재은/류가영/윤나래/최옥림☎8691/8692/8693/8694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긴급보호, 의료·법률·자립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치료·회복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 시설현황 : 총 25개소
 - 상 담 소(12) : 가정폭력 피해상담, 의료·법률지원 연계,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
 - 보호시설(12) :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자립지원 등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1) : 365일 24시간 접수·상담, 기관연계, 긴급구조지원 등
- 소요예산('23년) : 11,581백만원(국·시비 각 50%, 처우개선비 시비 100%)

□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 상담·보호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상 담 소 : 42,663건(심리정서 33,424, 의료·법률지원 1,286, 타시설 연계 248 등)
 - 보호시설 : 현원 110명, 52,902건(자립지원 20,322, 심리정서 17,832, 의료·법률 지원 3,479 등)
 - 1366 서울센터 : 상담 23,747건(가폭 9,270, 성폭 1,741, 교제폭력 674 등), 긴급피난처 입소 199명
- 보호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휴대폰 공기계 지원(총 31대, 2월)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2개 선정(3월)
 - 市 예산으로 지원하던 남성보호시설 →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매년 예산 44백만원 절감)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1개소 → 장애인 시설로 전환
- 민·관 협력으로 시설 입소자에 7천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 지원(9월)
 - 펄벅재단 : 생필품 등(5천만원 상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추석 명절음식 꾸러미 (2천만원 상당)

□ 향후계획

- 피해자 자립강화를 위한 일자리 제공 방안 논의(한국야쿠르트) : '23.11.~
-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보호시설 입소자 지속적 지원방안 논의 : '23.1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 조례 및 쟁점사항



2023. 10.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조례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서울본부’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 제정 청구를 접수(2011.5.20.)함.
- 이후 교육감이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2011.9.30.)하여 가결(2011.12.19.) 되었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 등을 거쳐 제정·시행(2012.1.26.) 중임.

○ 주요내용

-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제3조),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의 책무(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제7조), 학습에 관한 권리(제8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제9조), 학생의 휴식권(제10조), 학생의 문화활동, 개성 실현 권리(제11조, 제12조), 학생의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제13조~제17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18조~제20조), 학교복지, 교육환경, 급식, 건강 등에 관한 권리(제21조~제24조), 징계 등 절차와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5조~제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제28조), 학생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제29조~제32조),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에 관한 사항(제33조~제37조),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38조~제41조), 학생인권 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제42조~제43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제44조~제46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 사항(제47조~제50조) 등 총 5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됨.

□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교육청의 주요사업은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학생인권 증진지원,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사업 등이며, 2023년도 사업 예산은 미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1.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 학생인권위원회운영	0	19,635	15,550
• 학생참여단	0	33,080	34,220
• 학생인권민관네트워크운영	0	5,000	8,500
• 센터운영경비(복합기임대료등)	0	28,800	32,832
합계	0	86,515	91,102
2. 학생인권증진지원			
• 학생인권증진지원	0	156,180	156,180
• 학생인권영향평가	0	14,220	14,480
• 학생인권옹호구제매뉴얼개발	0	73,800	66,800
• 학생인권책자외국어 번역및인쇄	0	0	17,900
• 전년도사고이월(차별혐오표현가이드개발)	0	30,280	0
합계	0	274,480	255,360
3.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			
•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	0	82,480	82,480
합계	0	82,480	82,480
총합계	0	443,475	428,942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폐지조례안 접수 배경

- 조례 제정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¹⁾, ‘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²⁾,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³⁾,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⁴⁾ 등의 움직임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됨(2021.12.28.).
-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1) 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라1 결정

2)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추15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7구합88640 판결

4)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부모의 양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임.

○ 교육청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의지

※ 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음(2012.01.09.).

- 「초·중등교육법」 제8조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6)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상위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의무화 등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을 제한함.
- 학생의 집회 자유(제17조제3항)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 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제5조제1항) 중 ‘성(性)적 지향’은 성(性)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그러나 현재 교육청은 해당 사유 등을 이유로 제안된 폐지조례안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조례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보강한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음(2023.10.17.).

○ 학생인권 조례 대체 조례안 발의

-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책임, 학생 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의원, 의안번호 1080),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채수지의원, 의안번호 1075)” 등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와의 유사성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와 체계나 내용(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위원회 등)이 유사함.

□ 조례제정 배경 및 현황

○ 제정 배경

-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2017.12.20.).

○ 주요내용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제1조의2), 교육감의 책무(제3조),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제4조), 노동인권교육(제8조), 교원연수(제9조)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됨.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교육청의 주요사업은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 노동인권 교원연수, ▲ 지도자료 및 콘텐츠 개발, ▲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 등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미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노동인권증진지원 (보고서 40~49쪽)			
• 노동인권체험교육프로그램	0	41,680	62,910
• 노동인권교사직무연수	0	23,450	19,695
•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	0	126,998	100,530
• 노동인권교육수업자료개발보급	0	104,770	92,440
•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운영	0	7,000	6,000
• 학교노동인권담당자역량강화연수	0	5,000	5,000
• 학생노동인권증진협력학교운영	0	1,540	13,540
총합계	0	310,438	300,115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노동인권 대상과 교원연수의 한계

-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 직무연수를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개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직업 교육훈련과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제9조).
- 조례 제정 취지가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노동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구현이나, 교육청 내 공무원직,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등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제8조).
- 감정노동자로서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정책 및 사업이 전무한 상황임에 따라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정책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이 서울시와 협력·추진 중이나 적용 대상 등이 상이

-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을 서울시와 협력 추진 중이나, 본 조례는 학교(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⁷⁾을 대상으로 한 반면, 서울시 조례⁸⁾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서울 거주 청소년이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음.
- 다만, '21년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이 44.6%로 2018년 47.8%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꾸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별도의 실태조사없이 교육청 조사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7)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 수립(제6조)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제8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청 조례와의 상호 연계·시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교육청 소관)

조례제정 배경 및 현황

○ 제정 배경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됨(2017.4.28.).

○ 주요내용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제4조),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법률, 심리치료 등의 지원(제5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상 교육 및 연수(제6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도핑 방지 교육,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제7조의3)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됨.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교육청의 주요사업은 ▲학생선수 학습 지원, ▲학생선수 인권 교육 지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1억 9천만원임.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 학생선수 학습 지원	80,000	80,000	40,000
•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80,000	80,000	40,000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교육부사업)	(교육부사업)	(교육부사업)
•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30,000	30,000	30,000
합계	190,000	190,000	110,000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 및 연수 사업 시행시기의 적정성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 인성 및 진로, 생활 등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음.
- 다만, 교육청의 지도자 대상 교육 및 연수는 인권보호 관련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각종 체육활동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시기도 매년 말에 시행되고 있어 지도자의 전문성 및 학생선수 진로 지도 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과 사업시기 조정 등이 필요해 보임(제6조).

○ 조례 적용 대상과 예산 사업 대상의 불일치

-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는 직업선수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교육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함.
- 그러나 조례의 적용대상은 학생선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예산사업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선수에만 국한돼 학습 및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 제정 배경 및 조례의 구성

○ 제정 배경

-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가 2011년 제정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등 어린이·청소년의 생활공간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조례 필요성이 대두되자 의원발의(김희전의원 대표발의)로 제정(2012.11.1.)되었음.

○ 조례 구성

- 조례안은 총 제7장으로 이루어져 ‘총칙’,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 ‘인권보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교육·실태조사 및 평가’로 이루어져 있음.
- 제2장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는 제1절부터 제8절에서 인권의 원칙부터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참여권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제3장 ‘인권보장’에서는 가정이나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보호자나 시설관리자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단따돌림등을 방지하는 등 가정과 각종 어린이·청소년 시설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규정을 하면서, 시장의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도록 하고있음.
- 그 밖에 제4장 이하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비롯하여 ‘교육·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서울시의 주요사업은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황	
	2023	2022
1.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운영	2,000	8,400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50,000	
• 희망총회	5,000	5,000
•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10,000	10,000
• 어린이·청소년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	6,000	6,000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양성	165,850	165,850
•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컨설팅	12,750	12,750
• 청소년 의회 운영 등	20,000	20,000
합계	271,600	228,000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운영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	22,400	25,500
•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	58,800	58,800
합계	81,200	84,300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

-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교’·‘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에 비해 포괄적으로, 어린이(12세 미만)·청소년(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인권보호와 각종 권리 보장을 다루어 학생인권조례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큰 범위에서 작용하고 있음.

<용어 정의에 따른 적용대상 비교>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p>목적 : “학생”인권의 보장</p> <p>학생 : 서울시 내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p> <p>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p> <p>학생인권 : 헌법, UN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p>	<p>목적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 실현</p> <p>어린이 : 12세 미만의 사람</p> <p>청소년 :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p> <p>보호자 : 어린이·청소년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p> <p>인권 : 헌법, UN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p> <p>소수자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p>

-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자와 학교·유치원·평생교육기관 등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금지, 노동인권 보장 등 일반적인(학교 밖을 포함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각종 인권보호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됨.

<유사한 조문 비교>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제4조(책무) 교육감의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의 책무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28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11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제10조(휴식권)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17조(놀이 및 쉼 권리)
	제18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3조(자기결정권) · 제24조(참여권)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제9조(건강) 제25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인권 조례는 일방적인 대상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음.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p>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p> <p>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p>	<p>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p> <p>②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p> <p>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 ▶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교육감과 협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시장이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p>제36조(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학교내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 기관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어린이·청소년인권 조례는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보장함.
 - 학생인권옹호관, 시민인권보호관은 모두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는 조사기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직권조사로 인한 피해와 위법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상담 및 구제현황과 사건조사(58조제3항)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제도의 운용과 실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p>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 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인 이상을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 ▶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가정 및 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학교밖 상황에서의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함.

학생 인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p>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9.3.28></p> <p>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p> <p>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40조(탈가정 어린이·청소년) ①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사생활정보가 보호되고 학대경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1조(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이하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②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p>

	<p>제42조(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내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p>
--	---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규정**

- (제7조) ‘임신 또는 출산’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⁹⁾’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관련,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제12조) 개성과 표현의 자유 관련, 제정 당시 사회상규상 일정한 장소(학교 또는 학원 등) 등에서의 무분별한 복장(지나친 노출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에 대한 부모 또는 교육자의 훈육권한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한 바 있음.
- (제16조) 교육에 관한 권리 중, 폭력이나 억압이 수반되는 부당한 교육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여 교사나 보호자의 훈육이 이러한 조항을 통해 전면금지되어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청소년 참여기구(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통합연계 검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50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법정 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소년의회를 각각

9) ‘성적 지향’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끌리는 사회적 성(gender)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감정적, 낭만적, 육체적 끌림을 뜻하는 것으로,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로 인식되는 통상적인 범틀상의 용어이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별) 정체성’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기본적인 느낌으로서, 자기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확실히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이다.

운용 중이나 두 참여기구 역할의 유사성(정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등)을
들어 두 기구의 통합연계 운영을 검토 중임에 따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청소년의회 규정을 개정(삭제 또는 재량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정 배경 및 조례의 구성

○ 제정 배경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기본조례」 결정문(2012년 4월 12일)을) '12년 6월 8일 19명 의원의 공동발의(김희전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2.9.6. 가결·'12.9.28. 공포되었음.
- 제정당시 인권위의 권고사항에는 없던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추가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부여되었음.
- 2015년 개정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경우에만 조사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인지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하여도 조사하도록 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 2022년 시민인권보호관 조항 전반을 개정하여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조례 구성

- 조례안은 총 제5장으로 이루어져 '총칙', '인권도시 정책',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3조에서는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본 조례가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있음을 명시함.
- 제7조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제11조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제3장(제14조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 제4장(제18조 이하)에서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어 시민인권

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제5장(제20조 이하)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서울시의 주요사업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사업으로 전년대비 50%('22년 예산총액은 1,178,314천원)에 가까운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음('23년 예산의 현재 집행률은 54.7%).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황
	2023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장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 기본경비	37,140
합계	624,850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인권 기본조례는 서울시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떠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인권도시 정책, 침해구제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개별 인권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함은 기본원칙이고 우리 인권 기본 조례에서도 이를 명시하며, 시민들이 인권시책에 참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은 개별적으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기본조례와 연계가 미흡함.

-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대상은 서울시 및 소속 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한정적임.

시민들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사인간의 인권침해에 관해 직접 조사할 근거는 부족하여 조례를 통해 명확한 범위 내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음.

- 시나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등 여러 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 업무보고자료 5p.

○ 2023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3.10.16.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비고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권고	기각·각하 등	조사중	
249	22	227	30	5	22	3	전년도 이월사건(8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9회(정기회 7회/임시회 2회)
 -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 : 총 26건(권고 5건, 기각·각하 등 21건)

- 또한,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인권보호관’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주체가 되는데,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사례 등을 점검 후 제도 유지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복지정책실 소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장애인인권조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정(2011.1.13. 공포)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인권과 권리증진, 차별 규제 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임. 제정 이후 총 11차례 개정됨.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경과>

(‘23.10 기준)

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비고
02879	21-10-15	박기재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02579	21-08-10	이영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02144	21-02-04	이영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	
01712	20-08-10	이정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 제공	
00857	19-08-07	이영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과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00651	19-05-21	이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	
00560	19-03-29	이영실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	
02362	18-02-08	박마루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01835	17-06-01	박마루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과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	

00350	15-03-26	이복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	
01660	13-11-21	고만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발달장애인지원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체계, 지역 발달장애인지 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대안 가결, 2016.1.17. 공포)된 것임. 제정 이후 총 4차례 개정됨.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과>

(‘23.10 기준)

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비고
11-00454	23-02-02	윤영희	돌봄이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 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	
10-03196	22-05-20	이정인	자해·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	
10-01551	20-05-25	김용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순서를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정비	
09-02290	17-11-28	박마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밖에 조례상의 용어 등을 정비	

○ 주요 내용

- (장애인인권조례) 시장의 책무(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5조),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제6조의2), 전수조사(제7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과 홍보(제8조, 제9조), 장애인 보조견 홍보 및 교육과 인증사업 등(제9조2, 제9조의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과 기능 등 전반에 관한 사항(제10조~제10조의4),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제11조),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제12조), 보상금 지급 등 기타 사항(제13조, 제14조)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됨.

-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시장의 책무(제3조), 시민의 책무(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6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제6조2), 지원사업(제7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과 업무 및 역할(제8조, 제9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10조),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의 의무(제13조)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됨.

□ 장애인 지원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조례 관련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주요사업은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수립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임.
-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자체 소요예산이 없음.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08,282,093	199,495,643	191,477,388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331,800	289,000	-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1,179,969	1,110,264	1,243,026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 개선 필요(장애인 인권 조례)

-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조례 제7조10)에 근거,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2023.04.24.)
- 서울시의회 운영회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방식 대상에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폭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7개소(주간보호 134, 공동생활가정 169, 평생교육센터 24)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

○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조례 정비 필요(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장애의 의료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인권적) 모델에 기반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의 개념은, 장애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의료 개입을 통해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가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면 이들도 비장애인만큼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모델’로 구분됨.
- 한편, 동 조례는 제7조제1항11)에서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와 활동가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자폐성 장애를 뇌 작동방식의 차이에 비롯한 다양성이 아닌 소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이 돌봄 요구가 심각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한정돼 있고 사실상 돌봄요구가 심각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아 이들의 교육에 대한 자기결정권,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이는 발달장애인을 비장애 중심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이므로 조례에서 언급하는 '인간다운 삶'에 불일치한다고 설명함.
- 이 밖에 미등록 장애인이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지닌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 등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10.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동 조례는 1999년 제정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제정(2012.7.30.)된 것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가 2012년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을 선언함에 따라 그간 여성가족정책에 국한했던 성평등정책 수립영역을 전 부서로 확대 하고, 정책을 ‘여성 배려’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평등’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진됨.
- 제정 이후 총 10차례 개정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경과>

(‘23.10 기준)

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비고
10-00530	23-02-06	시장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건발생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 사항을 규정	
10-00326	22-10-17	시장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연장	
10-02380	21-05-25	시장	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성폭력 심의 위원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	
10-02327	21-04-02	조상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비밀유지 의무를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 ▲그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조항의 위치 변경	대안 (10-02742) 가결
10-02307	21-04-02	이병도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고, 다양해진 세대 구성을 조례에 담으며 서울특별시 활동 지원	

			센터 내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	
10-02208	21-02-05	김경영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위원회 성별 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회의 관련 규정을 마련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	
10-01858	20-08-12	권수정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과 피해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10-01244	20-01-31	김소양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선언일을 선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10-00705	19-05-24	시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신설,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 확산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 조정	
10-00694	19-05-24	이영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	

○ 주요 내용

- 동 조례는 총 9장 59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 시의 책무(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제5조) 등을 규정함.
-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등 전반에 관한 사항(제6조~제12조) 등을 규정함.
-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젠더자문관의 운영 등(제13조), 성평등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정책(제14조~제17조), 일·생활 균형 지원(제18조), 평등한 가족생활(제19조), 성인지 교육(제19조의2),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제20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제21조),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등 전반에 관한 사항(제21조의2~제21조의8), 심의 사건 신청의 각하 및 기각 요건(제21조의9, 제21조의 10), 권고 및 후속 조치(제21조의11), 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과 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제21조의12, 제22조), 여성의 복지·건강증진을 위한 책무 및 사업과 성평등한 도시공간 시설 조성(제25조~

제25조2),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제2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제28조), 성평등주간 행사 등(제28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제29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제30조), 자원봉사활동과 국제협력 지원(제31조, 제32조), 시민참여와 유공자 표창(제33조, 제34조) 등을 규정함.

-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성별영향평가(제3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제36조), 성인지통계(제37조), 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제30조) 등을 규정함.
- (제5장 성평등기금)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제39조, 제39조2),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과 준용(제40조~제41조의2) 등을 규정함.
-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지원센터, 제7장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42조, 제43조, 제45조), 지원에 관한 사항(제44조, 제46조), 지도·점검 등(제47조) 등을 규정함.
- (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제48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등 전반에 관한 사항(제49조~제55조), 차별조사관(제56조) 등을 규정함.
- (제9장 보칙) 사무의 위탁과 사전·원격회의 등 보충적인 사항(제57조~제59조)을 규정함.

□ 조례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위헌 주장과 폐지 촉구 등의 여론

-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 조례에 대한 위헌 주장과 폐지 촉구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임.
- 이들은 동 조례에서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이 남녀 양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성별체계를 부정하고 사회적·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지칭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 또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¹²⁾을 거슬러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조례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함.

○ ‘차별조사관’ 권한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 필요

- 시장은 동 조례의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변호사 또는 차별조사관(이하 ‘조사관’)을 둘 수 있음.
- 조사관은 동 조례의 제56조제3항¹³⁾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각종 기관의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이처럼 동 조례는 차별조사관의 자격요건,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조사관의 조사 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르는 공식적인 절차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 있으나 법 위반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인 후속 절차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차원의 감사 또는 고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권고 주체를 조사관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56조제3항)하여 공신력과 이행력을 강화하거나, 대우와 권한 부여 등에 있어 지원을 확대 하는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09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6일

제안자 :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음.
- 또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로 폐지조례안이 발의(2023.3.13.)된 바 있음.
-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2023.11.29.)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과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